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동작구 제4선거구 출신 이희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조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교육정책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의원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 7월 서울특별시의 조직개편으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원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한편, 협의회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과 정기회 개최 횟수를 조정하여 자율성과 효과성, 적법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협의회의 위원 구성과 정기회 개최 횟수에 대한 개정을 통해 각종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조례 제3조 제1항을 교육행정협의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사안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의 ‘여성가족정책실장’, ‘도시계획국장’을 「교육담당 국장」과 같이 ‘여성가족담당 실장’, ‘도시계획 담당 본부장’으로 각각 변경하여 조직개편 상 편제와 동일화 하는 작업을 하는 한편, 위원의 자격에 관하여 완화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3조 제3항 제4호에 ‘안전 제출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안전 협의 전문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 제2항에 협의회 회의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정기회의 횟수를 ‘매년 2회’에서 ‘매년 1회’ 개최로 개정하고 필요할 시 임시회의를 활용하여 행정 부담 경감 및 적법성을 제고하도록 함으로써 협의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